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996. 12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6년 11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1996년 11월 12일

다. 상 정 일 자 : 1996년 12월 18일

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 심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중등교육국장 : 송대헌)

가. 제안이유

- 보은도서관 및 영동도서관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고 제천도서관이 이전과 함께 수영장, 로울러스케이트장 등을 갖춘 종합문화시설로 됨에 따라 제천도서관을 폐지하고
- 도서관장의 보직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시서직으로 보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의 보직을 "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"에서 "지방사서서기관"으로 변경하고, 제천도서관의 폐지로 "제천도서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"를 삭제하며, 기타 도서관장은 "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"를 "지방사서주사"로 보한다로 변경함

- [별표]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중 제천도서관란을 삭제하고, 보은도서관의 위치 "교사리 390-1"을 "삼산리 125-1"로 하고, 영동도서관의 위치 "계산리 697-25"를 "부용리 20-3"으로 한다.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시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, 본 조례안은

도서관 및 독서진흥법(법률 5069, '95. 12. 29)이 개정됨에 따라

충청북도 중앙도서관장의 보직을 "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서서기관"을 "지방시서서기관"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한편 제천도서관이 종합문화시설로 됨에 따라 제천도서관을 폐지하고 보은도서관 및 영동도서관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[별표]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8. 개정조례안 : 별 첨

9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